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p> <p>1. 제안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0년 4월 12일 제출되어 2000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p>2. 제안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활동영역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건설에 기여하고, 아울러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대규모 행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p>3. 주요골자</p> <p>가 새서울자원봉사센터 설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의 대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8조).</p> <p>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 설정·운영,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현저한 공로자 등 포상 실시 및 자원봉사활동 경력자의 취업·임용·진학시 성적반영 권장, 자원봉사활동시 발생시 우려되는 재해·사망 등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또는 가입지원 등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정함. (안 제9조 내지 제11조)</p> <p>다 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p> <p>라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p> <p>○ 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종전의 사무처리 행위 등을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p> <p>4. 검토보고</p> <p>□ 총 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참고하여 최근 시민사회의 성숙과 특히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권장·지원을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자원 	<p>봉사자 보호·관리, 자원봉사자 포상, 자문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자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동안 시장방침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어오던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이 미제정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p>□ 새서울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서울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99년 11월 1일 「새서울자원봉사2002시민연대」 운동과 연계하여 문화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사무국 내에 설치하여 현재 계약직 공무원 3명과 일반직 공무원 1명을 포함 4명을 파견하여 센터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이와 같은 자원봉사센터는 설치근거가 불충분하고 운영주체와 센터의 성격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서울시장이 직접 설치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8조와 같이 필요시에 적정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이나 완전한 민간자율 운영이 아니라 현행 운영방식을 염두에 둔 임시방편적이고 작위적인 것으로 보임. 운영의 대행은 대리행위의 개념으로 서울시의 직영체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운영은 우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역량을 결집·조장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성숙한 시민사회의 정착을 위해 서는 장기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도록
---	---

<p>록 위탁하거나 완전히 민간화하여 필요할 경우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p> <p>□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조치와 관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9조 내지 제11조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자원봉사 주간 설정운영, 보험가입, 포상, 취업·진학에의 반영 권장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미흡하고 형식적인 방안에 불과 하며, 자원봉사 경력자에 대한 공직임용 등에서의 우대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자원봉사경력자에 대하여 취업 또는 진학시 자원봉사경력을 성적에 반영하도록 직장이나 학교 등에는 권장도록 하고 있으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책무로 정하고 있는 시장은 채용·승진 등 임용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누락시킨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임. <p>이는 본 조례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모범이 조기에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p> <p>.....</p> <p>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6조제2항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체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하고,</p> <p>동조제4항 중 “기타 센터의”를 “기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 등 센터의”로 한다.</p> <p>안 제7조제1호 중 “경우”를 “자원봉사단체”로 하고, 동조제3호 중 “후단의”를 “의”로 한다.</p> <p>안 제13조 중 “제6조·제7조 및 제12조의”를 “제6조 제2항·제7조 및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로 한다.</p>	<p>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나.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라.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마.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바. 교통 및 기초질서제도에 관한 봉사활동 사. 재해, 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아.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자.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차.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카.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시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p>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p>
---	---